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0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7. 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4. 7.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4. 7. 1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정이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3조~제4조)

다.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및 지급(안 제5조~제6조)

라. 장려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안 제7조~제8조)

마. 장려금의 지급 대장 관리(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추경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조건부 협의[사회보장조정과-8411(2023. 12. 18.)]
  → 동 사업과 관련한 국가 사업이 신설, 혹은 변경될 경우 해당 사업도 국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것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4601(2024. 4. 5.)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602호

가) 예고기간: 2024. 3. 25. ~ 2024. 4. 15.(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

-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3조～제4조)

◦ 육아휴직 대상자녀와 세대를 이루고 고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장려금의 지원신청 및 지급(안 제5조～제6조)

◦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장려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대장관리(안 제7조～제9조)

◦ 장려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대한 사항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지원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된 사항으로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의 공동 양육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없음

9. 심사결과: 2024. 7. 17.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